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27. 행정안전부장관 甲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2021. 6. 14.부터 2021. 6. 17.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 A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B와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였다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甲은 2021. 6. 4.까지 A의 장 및 B의 장에게 훈련일시, 훈련장소, 훈련내용, 훈련방법,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,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B가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B가 부담하나, 만일 B가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면 甲이 부담할 수 있다.

③ A의 장과 B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실시 결과를 2021. 6. 30.까지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甲은 재난대비훈련 평가의 결과를 2021. 7. 20.까지 A의 장 및 B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문 28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甲 ~ 丁의 지위와 권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<보기>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> ○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며, 그 위원장은 甲이 된다.
> ○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乙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이어 다음 순위로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丙이다.
> ○ 丁은 화재·위험물 사고,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다.

<보 기>

ㄱ. 甲은 해외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丙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.

ㄴ. 乙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사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·조정(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외)의 결과를 甲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ㄷ. 丙은 원자력안전 사고(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에 한정함)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되며,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乙에게 요청할 수 있고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乙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ㄹ. 丁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되며,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.

① ㄱ, ㄴ　② ㄱ, ㄹ
③ ㄴ, ㄷ　④ ㄱ, ㄷ, ㄹ

문 29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실무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.

④ 실무위원회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구이다.

문 30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행정안전부의 안전정책실장, 재난관리실장, 재난협력실장의 임기는 2년이다.

②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및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 임무수행에 관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또는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·통제를 따른다.

④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문 31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상황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행정기관·공공기관·공공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재난상황을 보고받은 시·도지사는 재난이 2개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.

문 32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한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.

② 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은 사회재난을 제외한 자연재난을 말한다.

③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
④ 재난의 복구 등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계 경보를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문 3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ㄱ.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ㄴ.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ㄷ.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우선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.
ㄹ.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진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의 요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예보를 실시한다.

① ㄱ, ㄷ
② ㄱ, ㄹ
③ ㄴ, ㄷ
④ ㄴ, ㄹ

문 3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.
②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,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.
③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④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헬기운항통제기관의 운항 승인을 얻어야 하고, 헬기 운항 후에는 지체 없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문 35. A도 B군에서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, B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그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. B군의 군수는 군(郡)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되어 군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ㄱ. B군의 군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피해상황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ㄴ. B군의 군수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 수송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ㄷ. B군의 군수는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·군·구의 장에게 인력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.
ㄹ. 군대책본부의 본부장인 B군의 군수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① ㄱ, ㄴ
② ㄴ, ㄷ
③ ㄷ, ㄹ
④ ㄴ, ㄷ, ㄹ